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12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9. 7.

판결 선고2021. 10.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10. 1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2020. 10. 29. '원고는 2020. 10. 29.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20. 11. 1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0년 제438호).

(2) 피고 B는 2020. 12. 29.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익자를 피고 B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B는 2020. 12. 29. E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1	피고 B	2003. 03. 31.	2003. 03. 3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2	피고 C	2018. 04. 09.	2018. 04. 05. 신탁
3	피고 B	2018. 05. 10.	2018. 05. 10. 신탁재산의 귀속
4	피고 C	2018. 05. 25.	2018. 05. 24. 신탁
5	피고 B	2020. 12. 29.	2020. 12. 23. 신탁재산의 귀속
6	피고 C	2020. 12. 29.	2020. 12. 29. 신탁(이 사건 신탁계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17. 10. 10.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므로, 위탁자가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책임재산에서 이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외의 다른 책임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 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동기나 피고 C이 어떤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가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 C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점, 피고 B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갖게 되는 수익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 C이 피고 B의 아버지의 회계 업무 담당자이자 재산관리인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어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피고 B의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도 신탁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C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초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기초사실 (3)항 표 순번 5) 담보대출을 받은 후(기초사실 (3)항) 다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의 책임재산 감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책임재산에서 이탈되는 등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 어렵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B의 책임재산 감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 C의 악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하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옥희

별지